

테러자금금지법 관련 법인 고객확인 절차 (CDD/EDD) 강화 안내

이 안내문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법인 고객확인 (CDD/EDD)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고객 유의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와 관련한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 개요

2026년 1월 22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에 대해 직간접 소유자 및 지배자에 대한 확인 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테러관련자 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테러자금금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 사항

이에 따라 당행은 법인 고객과의 신규 거래 또는 기존 거래관계 유지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직간접 소유·지배자 확인 절차]

- ◆ **법인 직·간접 소유자 확인** - 법인 소유 구조 (주주 현황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예시)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등
- ◆ **법인 직·간접 지배자 확인** - 의결권 행사, 임원 선임, 자금 운용 등 법인의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예시) 정관, 기타 관련 문서 등

✓ 상세사항

정의 및 판단 절차		필요 서류
법인 직·간접 소유자	법인의 총출연재산·총발행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출연 또는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등
법인 직·간접 지배자	지분율과 무관하게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u>직간접 지배자 판단기준</u>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직간접 지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 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자 ②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 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자 ③ 해당 법인과의 계약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의 구성이나 자금·재산의 운용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④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관 등

고객 유의사항

당행은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 확인 절차에 따라 고객확인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이에 따라 고객 신원 및 상기 절차에 따라 정보 및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거래 목적 및 성격,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의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이 거부될 경우 신규 거래는 거절될 수 있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끝-